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1. 1. 26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"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O 제안자: 구청장

O 제안일 : 2021. 1. 15.

O 회부일: 2021. 1. 18. (의안번호: 21 - 8)

2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조례」 중복 사항 삭제(안 제2조, 제7조, 제 8조, 제23조, 제31조)
- O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- 정책고객서비스 사업종료(2018.10.25.)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(안 제2조, 제46조)
- O 제정(개정)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(안 제24조, 제47조, 제48조)
- 업령개정에 따른 법령명, 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7조, 제39조)

4. 관계법령

- O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O 「전자정부법」
- O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
- O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O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23조, 제31조)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 영 조례」와 중복된 사항 삭제함.
- O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에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하는 사항임.
- (안 제2조, 제46조)에 정책고객서비스 사업종료(2018.10.25) 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함.
- O (안 제24조, 제47조, 제48조)에 제정(개정)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함.
- (안 제1조, 제27조, 제39조)에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, 조항 변경함.

O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정보화추진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하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